

2026학년도 개별학생교육지원 계획

수지초등학교

I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 4(개별학생교육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제40조의 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6-3호, 2026.2.20.)
- 「수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2025.12.19.개정)
- 「수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특례 운영계획(수지초-5163호, 2026.4.7.)

II 추진 배경

-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개별학생교육지원 계획 수립
-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한 장소, 시간, 인력, 학습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운영 필요

III 추진 목적

- 교육활동 방해 최소화하여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수업권 보호
-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입으로 학생 지도 책임성 제고
- 절차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실시로 공정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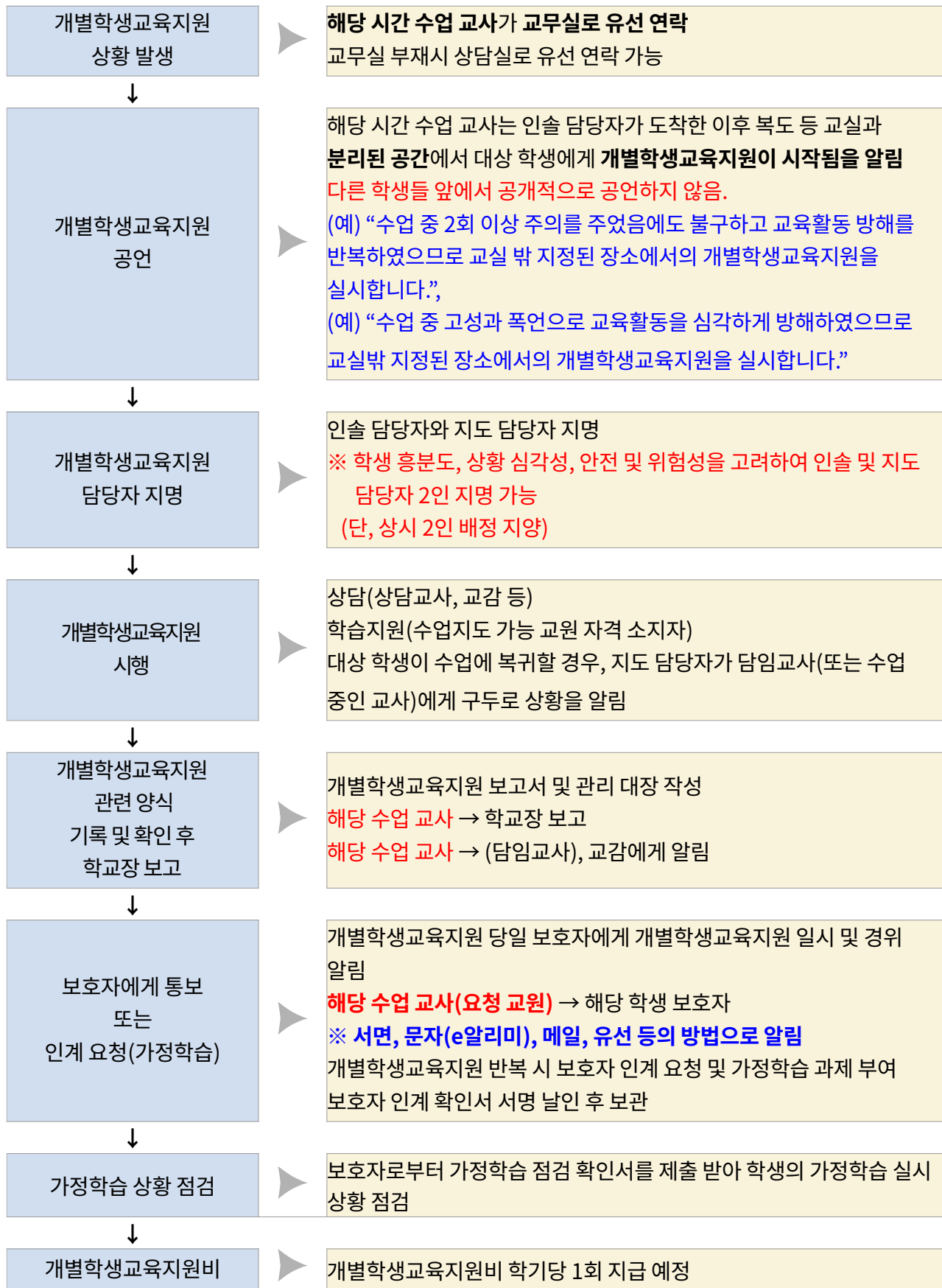
IV 기본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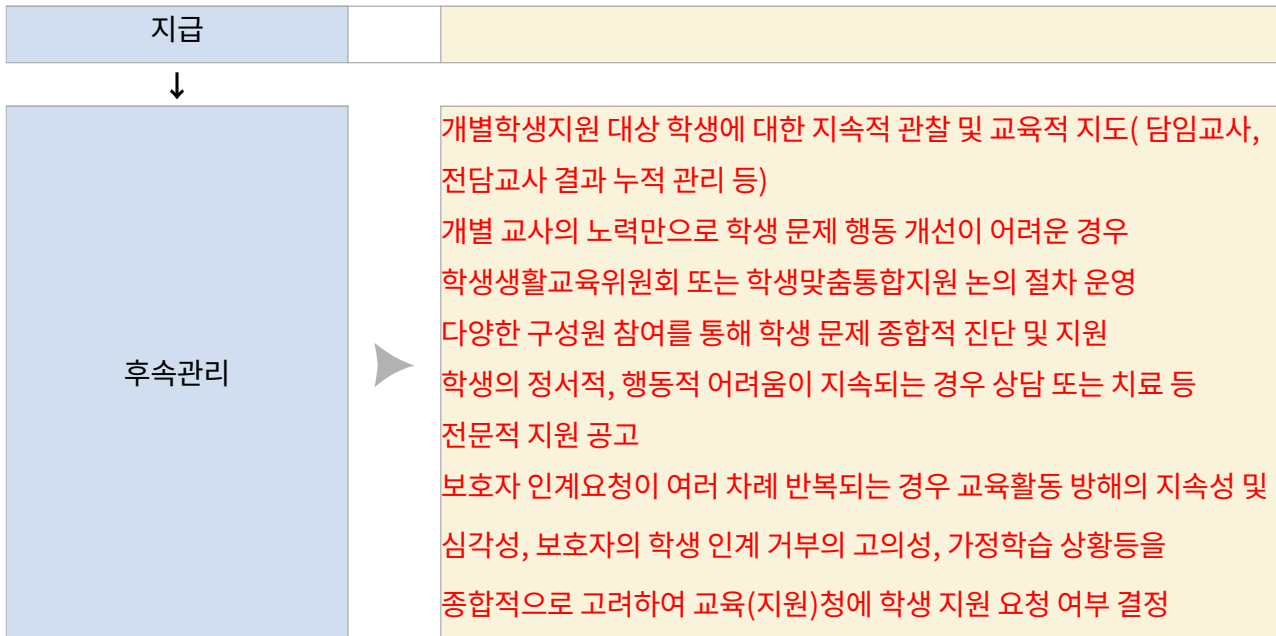
- 개별학생교육지원 장소, 시간, 인력, 학습지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
-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 학생 지도 교원에 대해 개별학생교육지원비 지급
- 개별학생교육지원 누적 기록을 통한 체계적 지도 및 관리

V

세부 내용

1. 개별학생교육지원 시행 절차





2. 개별학생교육지원 요건

-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 수업 중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3. 개별학생교육지원 장소 및 시간

- (장소) 민원면담실, 상담실, 기타 상담 및 학습지원이 가능한 장소(방송실, 교장실 등)

- (시간) 개별학생교육지원 상황이 발생한 해당 수업 시간 이내

※ 개별학생교육지원은 대상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함. 단, 대상 학생이 수업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 상황이 발생한 해당 수업 이후까지 개별학생교육지원이 연장될 수 있음.

4. 개별학생교육지원 인력

- (인솔) 본교 교직원

- (상담 또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상담교사
- (학습지원) 해당 시간에 수업이 없는 교원(해당 학년 우선 배정)

5. 개별학생교육 지도 방법

- (상담 또는 심리적 안정이 필요시)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 (학습지원)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수행

6. 개별학생교육지원 실시 이후의 절차에 관한 사항

○ (양식 기록)

기록 양식	기록 내용 및 방법
개별학생교육지원 보고서	해당 시간 수업 교사가 개별학생교육지원 요청 사유,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여부 및 내용 등 작성 지도 담당자가 개별학생교육지원 내용,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여부 및 내용 등 작성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리 대장	지도 담당자가 작성
보호자 인계 확인서	보호자 인계확인서 서명 날인 후 보관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	보호자로부터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를 제출받아 학생 가정학습 실시 현황 점검

- (학교장 보고) 개별학생교육지원 보고서 및 관리 대장을 학교장에게 보고
- (보호자 알림)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보호자에게 알림

※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 학교의 장은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개별학생교육지원비 지급

○ (관련 문서) 수지초-1186호(2026.2.5.)

○ (지급 대상) 개별학생교육지원 지도 교원

○ (지급 금액) 시간당 2만 원(40분 기준, 40분 미만 지도 시 동일 금액 지급)

○ (지급 기준) 학생생활지도 관련 분리된 학생, 학교폭력 분리 학생, 교육활동 침해 분리 학생을 지도한 교원

※ 분리 이외의 가해학생 선도, 징계 조치이행 등의 지도는 지급 대상 아님

※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관련 학생을 지도한 경우, 점심시간, 방과후 지도에 대해 지급 가능(단, 다른 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지급 시기) 학기당 1회(7월, 12월) 일괄 지급

VI 기대효과

○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 학교 부적응 학생,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맞춤형 개별교육지원 운영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활동에 대한 신뢰도 확보

서식1 개별학생교육지원 보고서

개별학생교육지원 보고서

학생 성명		()학년 ()반 ()번	성별	남 / 여
일시				
분리 장소				
관련자				
개별학생 교육지원 요청 사유 (요청교원 작성)	☐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 수업 중 고성·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내용:			
개별학생 교육지원 내용 (지도교원 작성)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학교장 보고	일시:	장소:	방법:	
보호자 알림	일시:	장소:	방법:	
작성일	20 년 월 일		지도 교사	(서명)

- ※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별학생교육지원 지도 대장

<수지초등학교>

[illegible]

서식3 보호자 인계 확인서

보호자 인계 요청서

수지초등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학생을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인계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가정학습 과제 실시) 학생이 가정에서 아래의 ‘가정학습 과제’를 실시하도록 협조

(가정학습 확인서 제출)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제출방법: 사진 전송, 메일 전송, 출력물 지참 중 택1

(가정학습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 또는 교무실로 연락

☎ 관련문의: 031-262-0055(수지초등학교 교무실)

20 년 월 일

수지초등학교장

보호자 인계 확인서

()학년 ()반 학생 성명: ()

보호자 인계 일시	보호자 인계 사유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00시 00분	교육활동 지속 방해	예) 사회: 온라인 학습 참여 수학: 교과서 내용 정리 등

법적 보호자 인계	보호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연락처	
※ 학생의 법적 보호자로서 학생을 인계함 (서명)		
제3자 인계	인계자 성명	
	인계자 연락처	
※ 학생의 법적 보호자가 학생을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3자인 본인에게 학생 인계를 위임하여 보호자 동의하에 학생을 인계함 (서명)		

서식4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

보호자 인계 후 다음과 같이 가정학습 과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학년 반 학생 성명:()

보호자 인계 일시	가정학습 과제 내용
년 월 일 00시 00분	예) 사회: 온라인 학습 참여 수학: 교과서 내용 정리 등

년 월 일

보호자 성명:()(서명)

수지초등학교장 귀하

위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점검·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수지초등학교장

참고

수지초등학교 학칙(학생생활규정)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중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련 조항

제00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 ①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상담실, 민원면담실 등)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 ② 개별학생교육지원 시간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 ③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봉사자 등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1. 인솔: ① 지원인력(행정실무사, 교육청 지원인력 등) ② 학교장 또는 교감 또는 상담교사 등
2. 학생지도: ① 학교장 또는 교감 또는 상담교사 ② ①번 대상자 부재시) 해당 시간에 수업이 없는 교사(※ 해당학년 교사 우선배정)
- ⑤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하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 ⑥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일 2026. 3. 1.)

-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되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교원은 제2항에 따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일 2026. 4. 14.)

-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수업 중 고성·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Q & A

Q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6항제4호 정규수업 이외 시간의 분리가 삭제되었는데, 정규수업 이외 시간의 분리 규정을 두어도 되나요?

A1. 둘 수 없습니다.

‘수업 중’ 교육활동 방해가 있는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Q2.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학생을 특정 장소로 분리하여 생활지도나 학습지도하는 등의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해도 되나요?

A2. 개별학생교육지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생활교육(조언, 주의, 훈육, 훈계,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Q3. 학칙으로 교외체험학습을 20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 학생의 가정학습 기간을 별도로 운영해도 되나요?

A3. 가능합니다.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 학생의 가정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4에 따라 운영되며 교외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가 다릅니다.

Q4.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중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개별학생교육지원비는 점심시간, 방과후에도 지급해도 되나요?

A4. 지급이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에서는 수업 시간에 학생을 분리하는 것을 개별학생교육지원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개별학생교육지원비 편성 지침에 따라 학교폭력과 교육활동침해 사안 발생 시 점심시간 및 방과후 시간에 분리가 필요한 경우 교원이 학생을 분리할 수 있으므로 개별학생교육지원비 지급이 가능하며 내부 계획을